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 - 68호

『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11월 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, 학교의 휴업일(재량휴업일, 개교 기념일 등)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 휴가제 운영 등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을 강화 하고, 학교 내 차별적 근무요인을 해소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 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학교 참여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8항)

나.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휴업일(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)을 이용하여 연간 5일 이내에서 학습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제9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 6264, 팩스 032-440-878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-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학교참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⑨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7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5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특별휴가) ① ~ ⑦ (생략)	제20조(특별휴가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<u>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4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학교참여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⑨ <u>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7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5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공무원법 ○ 제59조(위임규정) 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○ 제7조의3(특별휴가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공무원법】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
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】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
에 따른다.

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
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
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
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
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
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
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
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
야 한다.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
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
같다)·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

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
3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
제출한 경우

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
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 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-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해 당 없 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0조 특별휴가에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학교참여휴가 및 근무하는 학교의 휴업일 등을 활용한 학습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⇒ 특별휴가는 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산업경제위원회 박 승 희 의원